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94

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조계원 · 허 영

박민규 • 정동영 • 신영대

김우영 · 이춘석 · 황명선

박홍배 • 이워택 • 김태선

서영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·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.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'농업'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·저장·유통·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 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,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'적절한 규모'가 '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'임을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,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호 중 "산업"을 "가공·저장·유통·판매업"으로 한다.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,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"적절한"을 "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농업"이란 농작물재배업,	1
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	
된 <u>산업</u> 으로서 대통령령으로	<u>가공</u> ·저장·유통·판매
정하는 것을 말한다.	<u>업</u>
2. ~ 11. (생 략)	2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	제7조(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
공급) (생 략)	공급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
	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
	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
	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
	고,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
	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제32조(농지의 보전) ① 국가와	제32조(농지의 보전) ①
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	
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	
등을 위하여 농지가 <u>적절한</u> 규	<u>농산물 및</u>
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	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
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	

시행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